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박지원 · 박해철  
정진욱 · 김문수 · 이훈기  
송재봉 · 강득구 · 양부남  
윤종오 · 조계원 · 허종식  
박정현 · 문금주 · 이주희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소방병원은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,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현행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,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·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,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.

이에 국립소방병원을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·교육비 또

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제24조제2항제1호마목).

#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)를 15)로 하고, 같은 목에 1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목 15)[종전의 14)] 중 “1)부터 13)까지”를 “1)부터 14)까지”로 한다.

- 14)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  
소방병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.





<p>이 설립한 「보건의료 기술 진흥법」 제28조 의2제1항에 따른 의료 기술협력단</p> <p>바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